범죄단체조직·범죄단체가입·범죄단체활동·사기·사기방조·자동차관리

법위반

[인천지방법원 2018. 12. 10. 2018고단4303, 7941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피고인 1 외 21인 【검 사】임풍성, 백상준(기소), 임풍성(공판) 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신효 외 11인

【주문】

1

- 1. 피고인 1
-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.
- 2. 피고인 2
-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
- 3. 피고인 3
-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.
-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- 4. 피고인 4
-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.
- 5. 피고인 5
-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.
-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- 6. 피고인 6
-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.
-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- 7. 피고인 7
-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.
-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- 8. 피고인 8
-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.
-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9. 피고인 9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10. 피고인 10

피고인을 벌금 3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11. 피고인 11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12. 피고인 12

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13. 피고인 13

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14. 피고인 14

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15. 피고인 15

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16. 피고인 16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17. 피고인 17

```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  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 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  18. 피고인 18
 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  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 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  19. 피고인 19
 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.
  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 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  20. 피고인 20
 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.
  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 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  21. 피고인 21
 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.
  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 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  22. 피고인 22
 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.
 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, 12, 5,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.
[이유]
  1
【이유】
  ]
[이유]
  ]
[이유]
  1
[이유]
  ]
[이유]
  1
```

【이유】

]